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2. 14 선고 2015가합1148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 고 이화산업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6. 11. 16.

판결 선고 2016.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819,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은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2,10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 1) 피고는 1994. 12. 21. 하남시 망월동(이하 하남시 망월동을 '망월동'이라고만 한다) 431-5, 432-1, 432-3, 433-1, 433-3, 434, 434-1, 435-1, 435-3, 436-1, 436-3, 437, 437-1, 507, 508-5, 508-6, 508-7, 508-8, 508-14, 508-15, 509-1, 509-3, 715-2, 717-2, 719-1 토지의 소유권을, 1998. 6. 17. 망월동 711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위 26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1984년 무렵부터 이 사건부지 중 일부에서 벽돌공장과 타일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피고는 이 사건 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1984. 4. 27. 광주군수로부터 옥외탱크, 지하탱크 등 위험물 설치허가를 받았고, 1988. 9. 20.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6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지가 포함된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대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로, 원고를 그 사업시행자로 각 지정하고, 이를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9호)하였다.
-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지 및 지장물의 취득과 보상 등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1. 11.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2. 17. 수용개시일을 2012. 3. 19.로 정하여 이 사건부지를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2. 11. 16.

수용개시일을 2012. 12. 17.로 정하여 이 사건 부지의 지장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6)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3. 28.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2012. 3. 19.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의 발생 및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등

1) 이후 원고는 2013년 4월경 보금자리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부지에서 지반조사를 하던 중 유류오염물질이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하남시장에게 신고하였다.

2) 하남시장은 2013. 6.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가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양환경보전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2에서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3지역 우려기준1)을 초과하였으니 토지 정밀조사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오염토양 정밀조사 명령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7. 26.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하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이 2013. 7. 26.부터 2013. 10. 14.까지 정밀조사(이하 '이 사건 정밀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지 중 오염면적 24,414.5㎡, 오염부피 24,414.5m³ 부분에서 1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오염이, 오염면적 6,474.9㎡, 오염부피 6,474.9m³ 부분에서 3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오염이 각 발견되었다(3지역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오염에 해당하는 오염면적, 오염부피 부분은 1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오염에 해당하는 오염면적, 오염부피 부분에 포함된다).

다.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명령

하남시장은 2013. 10. 24. 이 사건 정밀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공장부지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지가 3지역의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나, 현재 이 사건 부지가 이 사건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단지로 사용될 것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오염토양에 대하여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하로 정화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이라고 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의 이행 등

- 1) 원고는 2013. 12. 24. 주식회사 에이치플러스에코 주식회사(이하 '에이치플러스에코'라고 한다)와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을 1지역 우려기준 이하로 정화처리하는 용역에 관하여 용역비를 2,252,283,000원으로 정하여 토양정화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이후 에이치플러스에코는 2014. 10. 30.까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정화처리(이하 '이 사건 정화처리'라고 한다)를 완료하였다.
- 3) 원고는 2014. 11. 12. 에이치플러스에코와 이 사건 정화처리 용역비를 2,223,386,000원으로 최종정산하였다.
- 4) 원고는 2013. 7. 26.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한국환경수도원구원에게 이 사건정밀조사 용역비로 총 191,208,6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24.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에이치플러스에코에게 이 사건 정화처리 용역비로 2,223,38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내지 22, 26, 27, 28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구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구상금 청구)

- 1)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에 기한 청구

가)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유류를 누출하였으므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로서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을 정화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① 이 사건 정밀조사 용역비로 191,208,600원을, ② 이 사건 정화처리 용역비로 2,223,386,000원을, ③ 정화처리 용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지에 설치되어 있던 가설사무소의 이전, 흙막이 추가공사 등의 비용으로 272,344,000원(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 비용'이라고 한다)을 각 지출하였고, ④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아파트단지 건설공사의 착공지연으로 인하여 간접비 125,167,000원(이하 '이 사건 간접비'라고 한다)이 증액되어 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위 나)항의 총 2,812,105,600원(= 191,208,600원 + 2,223,386,000원 + 272,344,000원 + 125,167,000원)은 이 사건 부지에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함으로써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돈이므로, 원고는 현행 토양환경보존법 제10조의 ④ 제4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2,812,105,600원을 구상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12,10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 토지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기한 청구

가) 원고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로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2,812,105,600원을 구상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12,10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함으로써 토양오염을 발생시켰는데, 이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가. 항의 2,812,105,600원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2,812,10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구상금 지급책임의 발생

1)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에 기하여 피고의 구상금 지급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항에 기하여 피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한국환경수도원과 에이치플러스에코에게 정밀조사 용역비와 정화처리 용역비를 지급한 2013. 7. 26.경부터 2014. 11. 12.경이라고 할 것인데,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부칙에 따라 2015. 3. 25.부터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급적용 등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고의 구상금 지급책임에 대하여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피고의 구상금지급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가) 판단

(1) 갑 제13, 14호증, 을 제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지는 농경지를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장을 운영하기 전에 유류 사용이 필요한 용도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옥외탱크, 지하탱크 등의 유류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경유와 중유를 취급하였는데,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 과정에서 지하탱크 하부 등 유류저장시설에서 유류유출로 인한 유류오염이 발견되었고, 유류의 성분도 경유와 중유성분이었던 점, ③ 이 사건 부지에는 피고가 관할행정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유류저장시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유류저장시설에는 유류의 유출을 막는 설비(콘크리트 피복)가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부지 중 오염이 된 토지의 면적은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24,414.5㎡, 3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6,474.9㎡로 비교적 넓은 면적인 점, ⑤ 피고의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1990년도 중반에서 2000년도 초반에 이 사건 부지 내 침수로 인한 유류유출로 인하여 민원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1988. 9. 20.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피고는 하남소방서에 1996. 7. 20. 이 사건 부지에 설치된 옥외탱크 1기, 지하탱크 2기에 대하여 용도폐지 신고를 한 후 8년이 지난 2004. 9. 24.에도 옥외탱크 1기와 지하탱크 1기에 대하여 다시 용도폐지 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부지에서 도시가스만을 사용하고 유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인도받기 이전에 피고가 설치한 옥외탱크, 지하탱크 등의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유류에 의하여 이미 오염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에서 정한 '토양오염물질(유류)을 누출·유출시킴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지를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인수한 자로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4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지에 토양오염물질(유류)을 누출·유출시킴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로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에 따라 공동으로 이 사건 부지에 발생한 토양오염을 정화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조치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위와 같은 둘 이상 오염원인자의 연대책임은 민법상 부진정연대책무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 부진정연대책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책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79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정화비용 중 피고의 부담부분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구 토양환경보전법(1995. 1. 5. 법률 제4906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제정토양환경보전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1996. 1. 6. 이전에 유류사용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정화책임 자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부지를 취득하였는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양오염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2) 피고의 주장 1에 관한 판단(피고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지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정 토양환경보전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6.

1. 6. 이전에 이 사건 부지에서 유류사용을 중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등 참조), 누군가의 행위또는 물건에 대한

지배에 의하여 토양오염이 과거에 시작되어 위와 같은 규정이 입법 · 시행될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종료되지 않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오염시킨 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정화조치를 완료한 2014. 10. 30.까지 지속되었고, 당시에는

구 토양환경보전법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에게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기하여 정화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법률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 2에 관한 판단(이 사건 수용재결로 이 사건 부지를 취득한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 4호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 유출시킴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를 오염원인자(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로 규정하면서 토양오염을

유발한 행위자체를 이유로 정화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을 뿐, 토양오염이 유발된 토지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관계를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유류를 누출 · 유출시킨이상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이유에 관계없이

정화책임을 부담한다고할 것이고,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는 정화책임을 인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 범위

1) 이 사건 정밀조사 용역비

가) 하남시장이 2013. 6.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이 '3지역허용기준'을 초과함을 이유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명령한 사실, 원고가 2013. 7. 26.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서 시행된 이 사건 정밀조사의 용역비로 191,208,6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용역비는 오염토양의 정화, 즉 이 사건 토양오염을 처리하고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토양오염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 할 것이다.

나) 다만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환경수도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구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밀조사도 원고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택단지)의설치자(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2013. 6. 3.자 하남시장의 원고에 대한 오염토양 정밀조사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서 주택단지의 건설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은 피고가 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적용되는 3지역 우려기준이 아니라 주택단지에 적용되는 1지역 우려기준이어서 원고 역시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이 1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야 했던 점(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1, 3항, 제14조 제1항 제2호 참조), ③ 토양오염 정밀조사의 경우 1지역인지 3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용역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정밀조사 용역비는 191,208,600원의 50%인 95,604,300원(= 191,208,600원 × 1/2)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정화처리 용역비

가) 하남시장은 2013.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를 1지역의 우려기준 이하로 정화조치하도록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서 이 사건 정화처리를 하였고, 2013. 12. 24.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그 용역비로 2,223,386,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용역비는 오염토양의 정화, 즉 이 사건 토양오염을 정화처리하고 원상복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 다

나) 다만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환경수도연구원장,에이치플러스에코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화처리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에서 주택단지의 건설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1지역 우려기준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하남시장도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1지역 우려기준 이하로 오염토양을 정화하도록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을 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서 계속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더라면, 피고는 공장용지에 적용되는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인 3지역 우려기준 이하로만 정화를 하면 될 뿐 1지역 우려기준 이하로 정화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점[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5조의3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③ 에이치플러스에코는 3지역 우려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화처리 용역비는 800,540,502원이 된다는 의견인 점, ④ 한편에이치플러스에코가 산정한 위 800,540,502원은 당초 원고와 에코에이치플러스가 체결한 토양정화용역계약의 용역비인 2,252,283,00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에코에이치플러스가 최종적으로 정산한 용역비인 2,223,386,00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790,269,493원(= 2,223,386,000원 \times 800,540,502원 \div 2,252,283,000원)$ 이 되는 점, ⑤ 다만 에이치에코플러스는 감소되는 물량, 단축되는 기간 등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위 800,540,502원 또는 790,269,493원이 정확한 정화처리 용역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고, 한국환경수도연구원도 감축되는 인건비와 직접경비등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정화처리 용역비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 점, 6원고는 2013년 4월경 이 사건 토양오염을 발견하고도 즉시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정화처리 작업도 일방적으로 진행한 점, ⑦ 위와 같은 원고의 일방적인 이 사건 정화처리 작업의 진행으로 정화처리 용역비가 일부 과다하게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⑧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토양오염이 발견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이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정밀조사 용역비는 '3지역 우려기준'을 적용한 정화처리 용역비인 790,269,493원의80%인 632,215,594원($= 790,269,493원 \times 0.8$, 원 미만 버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추가공사 비용 및 간접비

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 비용 및 간접비는 원고가 이 사건 정화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중 이 사건 부지에 주택단지의 건설을 위하여 설치한 가설사무소를 이전하거나 토공사의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 또는 증감하게 된 비용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 비용 및 간접비는 이 사건 토양오염을 처리하고 원상복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추가공사 비용 및 간접비 주장을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행하더라도,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기까지 수용 대상토지를 현존 상태 그대로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수용당시의 현상 그대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인도해 준 이상 자신의 인도의무를 다하였고, 달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부지의 오염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이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27,819,894원(이 사건 정밀조사 용역비 중 95,604,300원 + 이 사건 정화처리 용역비 중 632,215,5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각 용역비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로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용재결을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취득한 점, ② 이 사건 수용재결과 같은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처분으로서(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피고가 자신만의 의사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이 사건 사업의 인정처분이나 이 사건 수용재결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야만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로 될 뿐이다)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유통되게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에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목적물을 현존하는 상태로 인도할 의무만을 부담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에서 발생한 이 사건 토양오염에 관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현, 판사 김선범, 판사 공우진

별지

관련법령

○ **현행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이 조에서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④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명령을 받은 정화책임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양정화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정화책임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칙 <제12522호, 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오염원인자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가 양수 또는 인수 이전에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다.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3. 오염토양의 정화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① 법 제1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구거)·양어장·공원·사

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실 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
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 한 법
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끝.

1) 아래 별지 관련법령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지역은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되는 지역이고, 1지역은 주택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지역이다.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이 3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보다 더 엄격하다.

